

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	
번호	

제안연월일 : 2010. 10. 25.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주 문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 교육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을 강구함으로써 선진교육구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하여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 특별위원회” 를 구성한다.
- 나. 위원수는 7인 이내로 하며,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.
- 다.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.

## 2. 제안이유

-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비롯되는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,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, 빈곤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, 부족한 교육 기자재 확보 등의 교육문제를 마포구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생활양식에 맞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등 교육선진구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.

- 또한 교육현장에서는 혁신학교와 교육공동체 활동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도전이 시도되고 있어, 마포구 역시 새로운 교육지원의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음.
-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마포구 내 학교에 대한 자치구의 지원정책을 점검하고, 새로운 정책을 강구함으로써 마포구가 교육 선진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회”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3. 관련법규

- 「헌법」 제31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